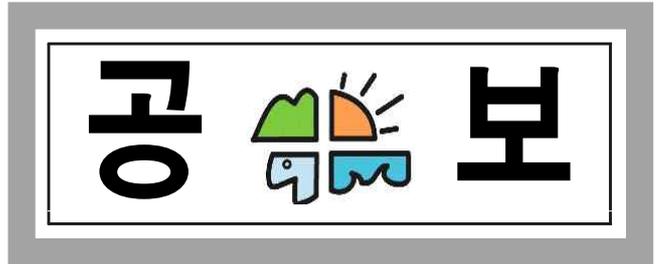
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003호 2016년 7월 25일(월)

## 훈 령

- 속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..... 2

## 공 고

- 「속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..... 7
-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고 ..... 9

## 속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속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제28조”를 “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35조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1호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중 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”를 “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제4조”를 “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제13조”로, “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제37조”를 “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제46조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1호 중 “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 제5조에 따른”을 “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0조에 따른”을 “법 제37조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31조”를 “법 제38조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 서식 중 “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제32조부터 제34조”를

“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39조부터 제42조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와 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에 따라 속초시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35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6조(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) ① 보안담당관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확인·검토 후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1.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6조(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생년월일 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) ① (생략)</p> <p>1.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에 의거 복제·관리하는 경우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8조(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복제·관리하는 경우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공간정보의 외주용역) ① (생략)</p> <p>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·발간</p>	<p>제21조(공간정보의 외주용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또는 복제·복사하려면 「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른 비밀 취급인가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, 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제37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-----  -----  ----- 제 1 3 조  -----  -----  ----- ,  -----  <u>제 4 6 조</u>  -----  ----- . 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) ① (생략)</p> <p>1. 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 지침」 제5조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·유출·침해·훼손·분실</p> <p>2.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·훼손·불법이용</p> <p>3. 법 제31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 행위</p>	<p>제27조(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) ① (생략)</p> <p>1.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·유출·침해·훼손·분실</p> <p>2. 법 제37조의  -----  -----  ----- 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4. ~ 5. (생략)            ② ~ ④ (생략)</p>	<p>3. <u>법</u> 제38조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4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「속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

속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등 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21일

### 속 초 시 장

1. 제 명 : 속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#### 2. 개정이유

상위법이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, 이와 연계된 우리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함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개정내용 반영 (안 제1조, 제16조제1항제1호, 제18조제1항제1호, 제21조제2항, 제27조제1항제1호, 별지제9호서식)

#### 4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## 5. 의견제출

가. 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민원봉사과장)
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217-701 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)

속초시 민원봉사과

(전화 : 033-639-2719, FAX : 033-639-2385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## 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민원봉사과(☎ 033-639-271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고

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관련하여 속초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- 제공일자 : 2016. 7. 25.
- 제공받는 기관 : 국민권익위원회
- 제공의 법적 근거
  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
 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6호, 제29조제1항
-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,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
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공사 및 용역 관리/감독, 보조금 지원, 제·세정, 인허가 민원인, 소속직원의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 등
- 개인정보 보유기간 : 2016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

2015년 7월 25일

속 초 시 장